

## “현대제철 사측, 교섭 해태 이어 도 넘은 노조 흔들기”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4일 부분 직장폐쇄 ... 금속노조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

현대제철 사측이 일부 공정 파업을 이유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책임 떠넘기기와 노조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24일 대표이사 명의로 ‘부분 직장폐쇄’ 공고문을 냈다.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서 이날 정오부터 당진제철소 1·2 냉연공장의 산세 압연 설비(PL/TCM) 라인을 폐쇄한다는 내용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조합원들이 해당 공정에서 일한다.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아래 당진하이스코지회)는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당진하이스코지회는 노조 인천,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와 함께 2024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다. 지회가 지난 8월 사측에 교섭 개시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를 받고서야 11월 28일 교섭장에 처음 나타났다.



사측 교섭 해태로 해를 넘겼고 여전히 현대제철 사측과 당진하이스코지회 교섭은 지지부진하다. 당진하이스코지회는 법적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1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명희승 당진하이스코지회장은 <금속노동자>와 인터뷰에서 사측의 부분 직장폐쇄에 대해 “교섭 해태도 모자라 노동자들 단체행동을 방해하려고 직장폐쇄까지 저질렀다. 도를 넘고 선을 넘은 명백한 노조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명희승 지회장은 “사측이 양재동(현대차그룹 본사) 눈치만 보고 사용자 입장만 고집한 탓에

해를 넘겨 교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직장폐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통제로 이윤을 독점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 노동통제전략을 꼬집었다.

한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인천지부, 충남지부, 포항지부 소속 현대제철 5개 지회는 24일 오후 당진 현대제철에서 확대간부 회의를 열어 당진하이스코지회 투쟁기금 모금을 결의했다.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

금속노조 경남지부, 1심 유죄 선고 반박 기자회견 ...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항소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 고성조선하청지회가 2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일 총파업 투쟁’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 계획을 알렸다.

2월 1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2년 거제통영고선조선하청지회 51일 총파업 투쟁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51일 파업 투쟁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22명의 조합원 전원에게 모두 징역 16년, 집행유예 28년, 벌금 3천1백만 원을 선고했다.

김일식 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혈값에 대우조선 인수한 한화오션은 막대한 흑자에도 삭감된 임금과 상여금을 복원시키지 않았고, 24년 단체교섭은 진전이 없다”라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작업지시는 한화오션에 의해 이뤄지지만, 한화오션 원청은 사용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기동 노조 경남법률원 변호

사는 법원이 파업 당시 선박 기록을 점거해 진수 작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당시 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배 2척 중 한 척은 블록이 나뉜 상태이고, 외판 용접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도크는 진수 작업이 이뤄질 수 없었다. 또한 외판 용접 작업에 대한 조합원들 방해도 없었고 충분히 작업이 가능했으나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시측 부당노동행위 인정 않고 하청노동자에게만 불리한 판결”**

또 법원은 작업장 진입로 방해를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작업장에 대한 출입로가 10곳이 넘었고, 조합원들은 그중 일부만 점거했다. 전면적 점거가 아니라 작업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원심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뿐 아니다. 1심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서 현장에 부착한 부착물을 원청 관리자가 임의로 회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단 근거도 적시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대응해 원청 직원들을 작업에 투입한 것은 명백한 대체인력 투입이지만, 법원은 원청은 노조법 제43조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기동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법리 해석이 하청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하청노동자 투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만 가지게 됐다”라며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선조선하청지회장은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날 대우조선 전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에 대한 재판도 통영지원에서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해 구속이 면제된 실형 1년을 받았다”라며, “공익을 위해서 파업한 노동자들에게는 대거 징역을 선고하고, 사익을 위해 노동자를 죽인 기업 대표는 실형이 면제된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